

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제5조의2관련)

1. 항해사

받으려는 면허	승무경력			
	자격	선박	직무	기간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 또는 2급 운항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 천600톤 이상의 상선(자동 화선박을 포함한다) 또는 무 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 는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 선	선장, 1등 항해사 또는 1등 운항사	2년
			선장, 1등 항해사 및 1등 운항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4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 1천600톤 미만 의 상선	선장 또는 1등 항 해사	3년
			선장 및 1등 항해 사를 제외한 선박 직원	5년
		배수톤수 1천600톤 이상의 함정	함장 또는 부장	2년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또는 3급 운항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 천600톤 이상의 상선(자동 화선박을 포함한다) 또는 무 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 는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 선	선박직원	2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 1천600톤 미만 의 상선	선장 또는 1등 항 해사	3년
			선장 및 1등 항해 사를 제외한 선박 직원	4년

		배수톤수 1천600톤 이상의 함정	함장 또는 부장	2년
			함정의 운항	3년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또는 4급 운항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상선, 총톤수 50톤 이상의 여객선 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길이 15미터 이상의 어선	선박직원	2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상선	선장 또는 1등 항해사	3년
			선장 및 1등 항해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4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상선, 총톤수 200톤 이상의 여객선 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길이 20미터 이상의 어선	선박의 운항	5년
	4급 항해사	배수톤수 500톤 이상의 함정	함장 또는 부장	2년
			함정의 운항	3년
		배수톤수 500톤 이상의 함정	함정의 운항	5년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총톤수 100톤 이상의 상선, 총톤수 30톤 이상의 여객선 또는 길이 12미터 이상의 어선	선박직원	1년
		총톤수 100톤 미만의 상선,	선박직원	2년

		총톤수 5톤 이상 30톤 미만의 여객선 또는 길이 9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의 어선		
		총톤수 100톤 이상의 상선, 총톤수 30톤 이상의 여객선 또는 길이 12미터 이상의 어선	선박의 운항	4년
	5급 항해사	배수톤수 100톤 이상의 함정	함정의 운항	1년
		배수톤수 100톤 이상의 함정	함정의 운항	4년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길이 12미터 이상의 어선	선박직원	1년
		총톤수 30톤 이상의 상선	선박직원	1년
		길이 9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의 어선	선박직원	2년
		총톤수 5톤 이상 30톤 미만의 상선	선박직원	2년
		길이 12미터 이상의 어선	선박의 운항	3년
		총톤수 30톤 이상의 상선	선박의 운항	3년
	6급 항해사	배수톤수 30톤 이상의 함정	함정의 운항	1년
		배수톤수 30톤 이상의 함정	함정의 운항	3년
6급 항해사		길이 20미터 이상의 어선	선박의 운항	1년

		총톤수 100톤 이상의 상선	선박의 운항	2년
		배수톤수 100톤 이상의 함정	함정의 운항	2년
		길이 9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의 어선	선박의 운항	2년
		총톤수 5톤 이상 100톤 미만의 상선	선박의 운항	3년
		배수톤수 5톤 이상 100톤 미만의 함정	함정의 운항	3년

비고

1. 5급 항해사부터 3급 항해사까지의 면허(어선면허는 제외한다)를 위한 승무경력에는 6개월 이상의 항해당직근무(실습을 포함한다)경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2. 4급 항해사부터 1급 항해사까지의 면허(어선면허는 제외한다)를 위한 승무경력에는 해당 선박 중 최상급 총톤수 이상의 선박에서의 6개월 이상의 승무경력(실습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야 하며, 5급 항해사 이하의 면허(어선면허는 제외한다)를 위한 승무경력에는 해당 선박 중 최상급 총톤수 이상의 선박에서의 3개월 이상의 승무경력(실습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
3. 받으려는 면허가 3급 항해사 이상의 면허 중 상선면허인 경우의 승무경력은 상선에 승무한 경력만 해당하고, 어선면허인 경우의 승무경력은 어선에 승무한 경력만 해당한다. 다만, 함정에 승무한 경력은 상선면허 또는 어선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산정에서 모두 인정한다.
4. 비고 제3호에도 불구하고 항해선인 상선에서 당직항해사로 승무한 경력은 6개월에 한정하여 어선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으로 인정한다.
5. 5급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6급 이하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6. 시운전 선박에 승무한 경력은 2007년 11월 23일 이후 시운전 선박에 승무한 경력부터 인정한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7. 자격란 중 운항사는 항해전문의 운항사를 말한다.
8. 어선의 "길이"란 「선박안전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어선의 길이를 말한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9. "여객선"이란 여객정원이 13명 이상인 선박을 말한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10. "함정의 운항"이란 함정에 승선하여 기관의 운전과 조리업무를 제외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11. "선박의 운항"이란 선박직원이 아닌 자로서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직원의 기관업무 보조 및 조리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2. 기관사

받으려는 면허	승무경력			
	자격	선박	직무	기간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 또는 2급 운항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3천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기관장, 운항장, 1등 기관사 또는 1등 운항사	2년
			기관장, 운항장, 1등 기관사 및 1등 운항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4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1천 500킬로와트 이상 3천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기관장 또는 1등 기관사	3년
			기관장 및 1등 기관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5년
		주기관 추진력이 3천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장	2년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1천 50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선박직원	2년
			기관장 또는 1등 기관사	3년
			기관장 및 1등 기관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4년

		트 미만의 선박		
		주기관 추진력이 1천 50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장 기관의 운전	2년 3년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선박직원	2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 750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기관장 또는 1등 기관사 기관장 및 1등 기관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3년 4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기관의 운전	5년
	4급 기관사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장 기관의 운전	2년 3년
			기관의 운전	5년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의 운전	5년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선박직원	1년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선박직원	2년

		트 미만의 선박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기관의 운전	4년
	5급 기관사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의 운전	1년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의 운전	4년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선박직원	1년
		주기관 추진력이 150킬로와트 이상 350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선박직원	2년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기관의 운전	3년
	6급 기관사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의 운전	1년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의 운전	3년
6급 기관사		주기관 추진력이 50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기관의 운전	1년
		주기관 추진력이 50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의 운전	2년
		주기관 추진력이 150킬로와트 이상 500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기관의 운전	3년

		주기관 추진력이 150킬로와트 이상 500킬로와트 미만의 함정	기관의 운전	3년
--	--	------------------------------------	--------	----

비고

1. 5급 기관사부터 3급 기관사까지의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에는 6개월 이상의 기관 당직근무(실습을 포함한다) 경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2. 4급 기관사부터 1급 기관사까지의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에는 해당 선박 중 최상급 주기관 추진력 이상의 선박에서의 6개월 이상의 승무경력(실습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야 하며, 5급 기관사 이하의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에는 해당 선박 중 최상급 주기관 추진력 이상의 선박에서의 3개월 이상의 승무경력(실습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
3. 6급 기관사 면허를 위한 승무시간 중 총톤수 5톤 이상 100톤 미만의 어선과 총톤수 100톤 이상의 어선에서 승무한 경력으로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어선면허에 한정하여 면허를 발급하여야 한다.
4. 자격란 중 운항사는 기관전문의 운항사를 말한다.

2의2. 전자기관사

받으려는 면허	승무경력			
	자격	선박	직무	기간
전자기관사	4급 기관사 이상의 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 이상의 운항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말한다)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기관부 선박직원	1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말한다)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 750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기관장 또는 1등 기관사	1년
			기관장 및 1등 기관사를 제외한 기관부 선박직원	2년
	4급 기관사 이상의 기관사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장	2년
	5급 기관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말한다)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 750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기관부 선박직원	2년

		는 무제한수역을 말한다)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 트 이상의 선박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 트 이상 750킬로와트 미만 의 선박	기관장 또는 1등 기관사	2년
			기관장 및 1등 기관사를 제외한 기관부 선박직원	3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 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 는 무제한수역을 말한다)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 트 이상의 선박	기관의 운전	5년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 트 이상의 함정	기관의 운전	5년
전자 기관사 (제4조 제1항 제3호의 3에 따른 이동식 시추선 면허에 한정 한다)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전기 기사 이상 또는 전자 기기 기능 장·전자기 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이동식 시추선	선박의 전기 또 는 전자 업무	1년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전기 기능사 이 상 또는 전 자기기 기 능사·전자 산업기사 이상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이동식 시추선	선박의 전기 또 는 전자 업무	2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이동식 시추선	선박의 전기 또 는 전자 업무	2년 6개월

3. 통신사

가. 전파통신급

받 고 자	승무경력
-------	------

하 는 면허	자격	선박	직무	기간
1급 통 신사	전파전자통 신기사 이상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무선통신설비를 갖춘 선박 함정	무선통신의 담당 또는 실습	6월
2급 통 신사	전파전자통 신산업기사 이상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무선통신설비를 갖춘 선박 함정	무선통신의 담당 또는 실습	6월
3급 통 신사	전파전자통 신기능사 이 상	무선통신설비를 갖춘 선박 함정	무선통신의 담당 또는 실습	없음
4급 통 신사	제한무선 통 신사 이상	무선통신설비를 갖춘 선박 함정	무선통신의 담당 또는 실습	없음

나. 전파전자급

받 고 자 하 는 면허	승무경력			
하 는 면허	자격	선박	직무	기간
1급 통 신사	전파전자통 신기사 이상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GMDSS)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	통신의 담당 또는 실습	3월
2급 통 신사	전파전자통 신산업기사 이상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GMDSS)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	통신의 담당 또는 실습	3월
3급 통 신사	전파전자통 신기능사 이 상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 관 련설비를 갖춘 선박	통신의 담당 또는 실습	없음
4급 통 신사	해상무선 통 신사 이상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 관 련설비를 갖춘 선박	통신의 담당 또는 실습	없음

비고

1. 가목 및 나목의 자격은 전파법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어야 한다.
2. 무선통신 또는 통신의 실습은 선장·항해사 또는 운항사의 직무와 병행하여 할 수 있다.

4. 소형선박 조종사

받 으 려 는 면허	승무경력			
면허	자격	선박	직무	기간

소형선박		총톤수 2톤 이상의 선박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	2년
조종사		배수톤수 2톤 이상의 함정	함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	2년

비고

「낙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낙시어선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한 낙시어선 및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유선 및 도선에 승무한 경력은 톤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5. 운항사

받고자 하는 면허	승무경력			
	자격	선박	직무	기간
1급 운항사	2급 운항사, 1급 항해사 또는 1급 기관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자동화선박	선장·운항장 또는 1등 운항사 선박직원	2년 4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상선	선장·기관장·1등 항해사 또는 1등 기관사 선박직원	3년 5년
		배수톤수 1천600톤 이상의 함정	함장 또는 부장	3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자동화선박	선장·운항장 또는 1등 운항사 선박직원	2년 3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상선	선장·기관장·1등 항해사 또는 1등 기관사 선박직원	3년 4년
2급 운항사	3급 운항사, 2급 항해사 또는 2급 기관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자동화선박	선장·운항장 또는 1등 운항사 선박직원	2년 3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상선	선장·기관장·1등 항해사 또는 1등 기관사 선박직원	3년 4년
		배수톤수 500톤 이상의 함정	함장 또는 부장	3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함정의 운항	4년
3급 운항사	4급 운항사, 3급 항해사 또는 3급 기관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직원	2년

		총톤수 1천600 톤 이상의 자동 화선박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상선	선장·기관장·1 등 항해사 또는 1등 기관사 선박직원	2년 3년
		배수톤수 200톤 이상의 함정	함장 또는 부장 함정의 운항	2년 3년
4급 운항사	4급 항해사또는4급기 관사			

비고

1. 받고자 하는 면허가 항해전문의 운항사인 경우의 자격은 항해사 또는 항해전문의 운항사에 한하며, 받고자 하는 면허가 기관전문의 운항사인 경우의 자격은 기관사 또는 기관전문의 운항사에 한한다.
2. 운항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위 표에 따른 승무경력에 등급별로 각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해당직근무경력 또는 기관당직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항해당직근무경력 또는 기관당직근무경력을 산정할 때에는 위 표에 따른 승무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 동안 행한 항해당직근무경력 또는 기관당직근무경력을 합산한다.
 - 가. 1급 항해전문의 운항사는 24월 이상의 항해당직근무와 6월 이상의 기관당직근무
 - 나. 1급 기관전문의 운항사는 24월 이상의 기관당직근무와 6월 이상의 항해당직근무
 - 다. 2급 항해전문의 운항사는 12월 이상의 항해당직근무와 6월 이상의 기관당직근무
 - 라. 2급 기관전문의 운항사는 12월 이상의 기관당직근무와 6월 이상의 항해당직근무
 - 마. 3급 운항사 또는 4급 운항사는 6월 이상의 항해당직근무(실습을 포함한다)와 6월 이상의 기관당직근무(실습을 포함한다)

6.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받으려는 면허	승무경력				
	자격	선박 또는 항공기	직무	기간	승선 시간
중형 수면 비행	4급 항해사 또는 4급 운항사 이상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 상의 상선, 총톤수 50톤 이상의 여객선·어선	선박 직원	2년	—
				3년	

선박 조종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상선			
		배수톤수 500톤 이상의 함정	함장 또는 부장	2년	—
			함정의 운항	3년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최대 이수중량 10톤 미만의 수면비행선박	선박 직원	—	200시간
소형 수면 비행선박 조종사	5급 항해사 이상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톤 이상의 상선 또는 총톤수 30톤 이상의 여객선·어선	선박 직원	1년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톤 미만의 상선 또는 총톤수 5톤 이상 30톤 미만의 여객선·어선		2년	
		배수톤수 100톤 이상의 함정	함장 또는 부장	1년	—
			함정의 운항	2년	
		수면비행선박	수면비행선박의 운항	2년	—

비고

항해사 또는 운항사 자격과 그에 따른 승무경력을 갖춘 사람이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승무경력 외에 「항공법」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